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6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이훈기 · 박지원 · 김남근
민병덕 · 강준현 · 박지혜
김의겸 · 박용갑 · 김현정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함. 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도 감소하여,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나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유인은 국내 증시에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다수 존재하는 요인 중 하나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의 하한선으로 하려는 것임.

한편, 평가기준이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부상 순자산인지 세무상 순자산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가기준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제3항).

또한 법인을 통해 자회사·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하위 상장회사의 낮은 주가가 이를 보유한 상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평가 하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이에 해당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회사·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다단계 지배구조에서도 실질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5항 신설).

더불어 자본잠식,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또는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아울러 상속·증여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실제로 실현하는 매

각거래와 다르게, 저평가된 최대주주 상장주식에 순자산가액의 80%라는 평가 하한선을 두는 만큼,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률적으로 추가 반영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현행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장·비상장주식 모두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자 함. 이와 함께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에 따른 납세부담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은 주가를 이용한 상속·증여세 절감 유인은 제한하되,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주가 저평가가 불가피한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이 호에서”를 “이 조 및 제73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상장주식을 제1항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계속적인 손실, 자본잠

식, 채권금융기관과의 경영정상화 약정, 회생절차 또는 과잉공급 해소, 산업경쟁력 회복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장주식의 평가에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또는 이 항에 따라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납의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 ----- ----- -----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u>제63조제1항제1호가목</u> 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 ----- ----- ----- ----- ----- ----- ----- ----- ----- <u>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상장주식을 제1항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계속적인 손실, 자본잠식, 채권금융기관과의 경영정상화 약정, 회생절차 또는 과잉공급 해소, 산업경쟁력 회복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

<신 설>

④ (생 략)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려움이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장주식의 평가에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또는 이 항에 따라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3조(물납) ① -----

-----.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u>소재하는 부동산</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 3. (생략) ② (생략)	1. ----- ----- ----- ----- ----- <u>소재</u> <u>하는 부동산과 최대주주등의</u> <u>상장주식</u>----- ----- -----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